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604-4-1616
건명	유한회사 엠에스 소유물건
의뢰인	완도농업협동조합장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28 (쌍촌동, 동광회관 5층)
대표전화 : 062-651-5801 FAX : 062-651-5802

대 상 물 건 현 황

건 명 유한회사 엠에스 소유물건

소재 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5-1 제2층 제201호 외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모성주)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지사장

모

성

주

범 상 운



감정평가액 **일십이억팔천사백만원정 (₩1,284,000,000.-)**

의뢰인	완도농업협동조합장	감정평가목적	공매 (승인번호 : P260420-D003)	
제출처	완도농업협동조합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수탁자)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 건축물대장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6. 04. 20	2026. 04. 17 ~ 2026. 04. 20	2026. 04. 2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별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8개호	구분건물	8개호	-	1,28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284,000,000

심사
확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송

재

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강진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건은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으로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4월 20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6년 4월 17일 ~ 2026년 4월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그 밖의 사항

- 본건 구분건물 일련번호 (가) ~ (라) 및 일련번호 (마) ~ (사)는 각각 기준시점 현재 경계벽이 제거된 틈상가이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하며, 구획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현황 각 호별로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개별호의 단독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체로 거래(분양) 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개별평가는 곤란하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명세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배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토지 : 건물 = 40 : 60)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9.04.30.에 신탁등기(수탁자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가 되어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의 위치는 '건축물현황도' 및 실제 점유부분으로 확인하였으며,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평가는 공매를 위한 목적의 평가로서 담보 등 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1. 건물 개요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5-1	동 수	1동
건물명	-	층 수	지상 2층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세대 수	13개호
연면적 (㎡)	2,102.56	사용승인일	2018.12.20

2. 대상물건 호별 개요

일련번호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	공용면적 ¹⁾ (㎡)	전유+공용 (㎡)	전용률 (%)	대지권면적 (㎡)
가	제2층 제201호	골프연습장	-	82.17	17.7486	99.9186	82.24	118.4257
나	제2층 제202호	골프연습장	-	108.93	23.5287	132.4587	82.24	156.993
다	제2층 제203호	골프연습장, 휴게음식점	-	108.93	23.5287	132.4587	82.24	156.993
라	제2층 제204호	골프연습장	-	108.93	23.5287	132.4587	82.24	156.993
마	제2층 제205호	의원	-	108.93	23.5287	132.4587	82.24	156.993
바	제2층 제206호	의원	-	108.93	23.5287	132.4587	82.24	156.993
사	제2층 제207호	의원	-	82.17	17.7486	99.9186	82.24	118.4257
아	제2층 제208호	골프연습장	-	108.93	23.5287	132.4587	82.24	156.993

1)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만 포함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ㄱ	서성리 97외	후레쉬빌2차주거복합아파트 제201동 제1층 제110호	학원	54.946	2025.05.29	199,000,000	3,621,737
			-		2003.08.13		
ㄴ	서성리 210	더브이베르가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	근린 생활시설	33.73	2024.05.18	90,780,000	2,691,372
			-		2018.11.16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감정평가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전유㎡)
a	서성리 594	이安家 제104동 제3층 제301호	학원	60.53	2025.11.21	담보	100,000,000	1,652,073
			-		2014.09.11			
b	남성리 161	강진읍 남성리 161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식회사중양팰리체) 주건축물제1동 제2층 제201호	일반의원	226.2	2025.07.24	담보	532,000,000	2,351,900
			-		2019.06.12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	층	위치	가격수준(원/전유㎡)	비고
기존 주택지대	근린생활시설	2층	-	약 1,600,000 ~ 1,700,000 수준	본건 유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지역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의 지수는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3.1.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

일련 번호	지 역	유 형	적용 통계지수
가 ~ 아	전남	매장(집합)	지역 : 전남 (25.05.29~26.04.20) 2025년 02분기 : -0.41 2025년 03분기 : -0.52 2025년 04분기 : -0.43 2026년 01분기 이후 : -0.43 (2025년 04분기 자료)

3.2.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 아	ㄱ	2025.05.29 ~ 2026.04.20	$(1-0.0041 \times 33 \div 91) \times (1-0.0052) \times (1-0.0043)$ $\times (1-0.0043 \times 110 \div 92) \approx 0.98396$	0.98396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상업용]

요인구분	비교항목	세항목
(단지) 외부요인	주요시설과의 접근성	상업지역 중심의 접근성
		공공시설(관공서 등)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계통, 접면)
		교통규제의 정도(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고객의 유동성 및 적합성
상권의 특성	인근 이용상황과의 관계성	
	유효 수요권의 크기, 고객군의 특성	
	상권의 역동성	
(단지) 내부요인	건물의 규모	건물의 전체 층수(지상층수, 지하층수), 총 호수 등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각종 설비상태(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층간 이동경로의 편의성
	건물의 노후도 및 관리상태	
	주차의 편리성	지상·지하 주차시설의 규모 및 상태, 전용 주차공간의 유무,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공실률 및 입점업체 구성	건물 전체 공실률
입점업체의 인지도·선호도 및 규모 등		
호별요인	층별효용	
	위치별 효용	호의 배치(전면, 후면, 측면, 내부 등)
		주출입구와의 접근성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와의 접근성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외부 접근성 및 가시성(외부 연결계단 유무, 지하 썬큰(Sunken) 유무 등)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기타요인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 ~ 라	ㄱ	0.73	1.03	0.60	1.00	0.451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단지내부요인(건물의 노후도 및 관리상태 등)에서 다소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교통의 편의성 및 상권의 특성 등) 및 호별요인(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합니다.						
마 ~ 아	ㄱ	0.73	1.03	0.57	1.00	0.429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단지내부요인(건물의 노후도 및 관리상태 등)에서 다소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교통의 편의성 및 상권의 특성 등) 및 호별요인(층별 효용 및 위치별 효용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5.1. 적용단가

[적용단가: 원 미만 절사]

일련 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가	제2층 제201호	3,621,737	1.000	0.98396	0.451	1,607,203
나	제2층 제202호	3,621,737	1.000	0.98396	0.451	1,607,203
다	제2층 제203호	3,621,737	1.000	0.98396	0.451	1,607,203
라	제2층 제204호	3,621,737	1.000	0.98396	0.451	1,607,203
마	제2층 제205호	3,621,737	1.000	0.98396	0.429	1,528,803
바	제2층 제206호	3,621,737	1.000	0.98396	0.429	1,528,803
사	제2층 제207호	3,621,737	1.000	0.98396	0.429	1,528,803
아	제2층 제208호	3,621,737	1.000	0.98396	0.429	1,528,8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비준가액: 유효숫자 셋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가	제2층 제201호	1,607,203	82.17	132,000,000
나	제2층 제202호	1,607,203	108.93	175,000,000
다	제2층 제203호	1,607,203	108.93	175,000,000
라	제2층 제204호	1,607,203	108.93	175,000,000
마	제2층 제205호	1,528,803	108.93	167,000,000
바	제2층 제206호	1,528,803	108.93	167,000,000
사	제2층 제207호	1,528,803	82.17	126,000,000
아	제2층 제208호	1,528,803	108.93	16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1,284,000,000
합 계	1,284,000,000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5-1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탐진로 51-11			1층	1,066.67			
				2층	1,035.89			
	"	85-1	답		2,492			
			(내) 일반철골구조 제2층 제201호	82.17	82.17	13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99.9186㎡)	
			1. 소유권	2,492× 118.4257	118.4257			
			대지권	2,492				
			토지·건물 토 지 :	52,800,000				
			건 물 :	79,200,000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라				(내) 일반철골구조 제2층 제204호	108.93	108.93	175,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32.4587㎡)
					2,492×			
				1. 소유권	156.993	156.993		

				대지권	2,492			
				토지·건물				
토 지 :	70,000,000							
건 물 :	105,000,000							
마				(내) 일반철골구조 제2층 제205호	108.93	108.93	167,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32.4587㎡)
					2,492×			
				1. 소유권	156.993	156.993		

				대지권	2,492			
				토지·건물				
토 지 :	66,800,000							
건 물 :	100,2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바				(내)					
				일반철골구조					
				제2층 제206호	108.93	108.93	167,000,000	비준가액	
					2,492×			(공용면적	
				1. 소유권	156.993	156.993		포함 132.4587㎡)	
			대지권	2,492					
			토지·건물						
			토 지 :	66,800,000					
			건 물 :	100,200,000					
사				(내)					
				일반철골구조					
				제2층 제207호	82.17	82.17	126,000,000	비준가액	
					2,492×			(공용면적	
				1. 소유권	118.4257	118.4257		포함 99.9186㎡)	
			대지권	2,492					
			토지·건물						
			토 지 :	50,400,000					
			건 물 :	75,600,000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아				(내) 일반철골구조 제2층 제208호	108.93	108.93	167,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32.4587m)
				1. 소유권	2,492× 156.993	156.993		
				대지권	2,492			
				토지·건물				
				토 지 :	66,800,000			
				건 물 :	100,200,000			
	합 계			이 하	여 백		₩1,284,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지리적 위치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소재 "강진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	본건 주위는 상가 및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환경	본건 단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용은 보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면 도로	서성리 85-1 : 본건 단지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지세 및 형상	서성리 85-1 : 부정형 평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
건물 구조 및 마감재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 외 7개호로서, 외벽 :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벽지,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타일 깔기 등, 창호 : 새시창 등입니다.
이용 상태	일련번호(가) ~ (라) : 경계벽이 제거된 텨상가로서, 골프연습장(LC골프연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마) ~ (사) : 경계벽이 제거된 텨상가로서, 근린생활시설(더블당구클럽)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아) : 골프연습장(LC골프연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일련번호(가) ~ (라) : 전기설비, 공동 위생·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일련번호(마) ~ (아) : 전기설비, 공동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임대 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구분건물 일련번호 (마) ~ (사)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원'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5-1 제2층 제2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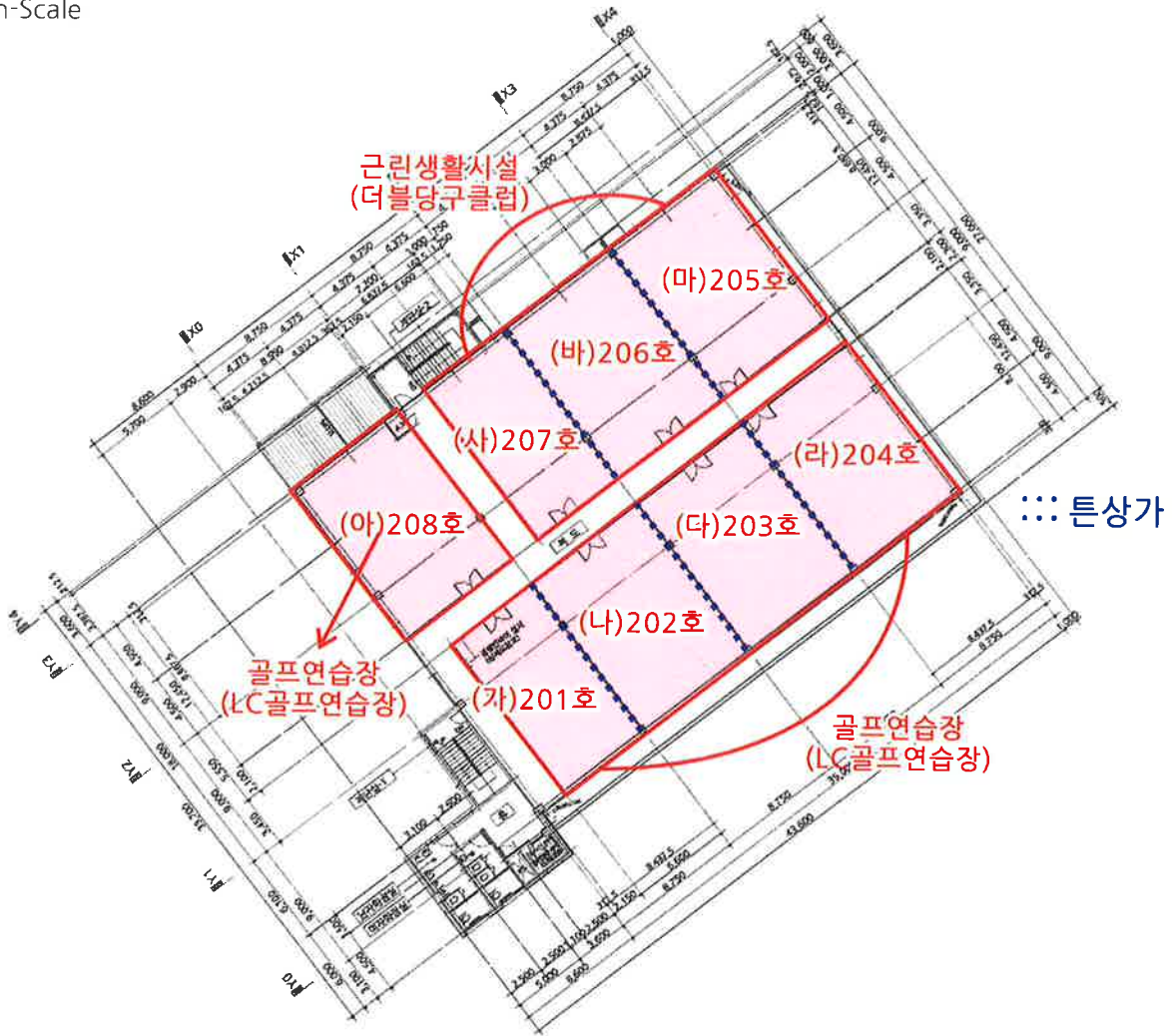


건물 개황도 및 이용상태

4

Non-Scale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5-1 제2층

제201호 [일련번호(가)], 제202호 [일련번호(나)]
 제203호 [일련번호(다)], 제204호 [일련번호(라)]
 제205호 [일련번호(마)], 제206호 [일련번호(바)]
 제207호 [일련번호(사)], 제208호 [일련번호(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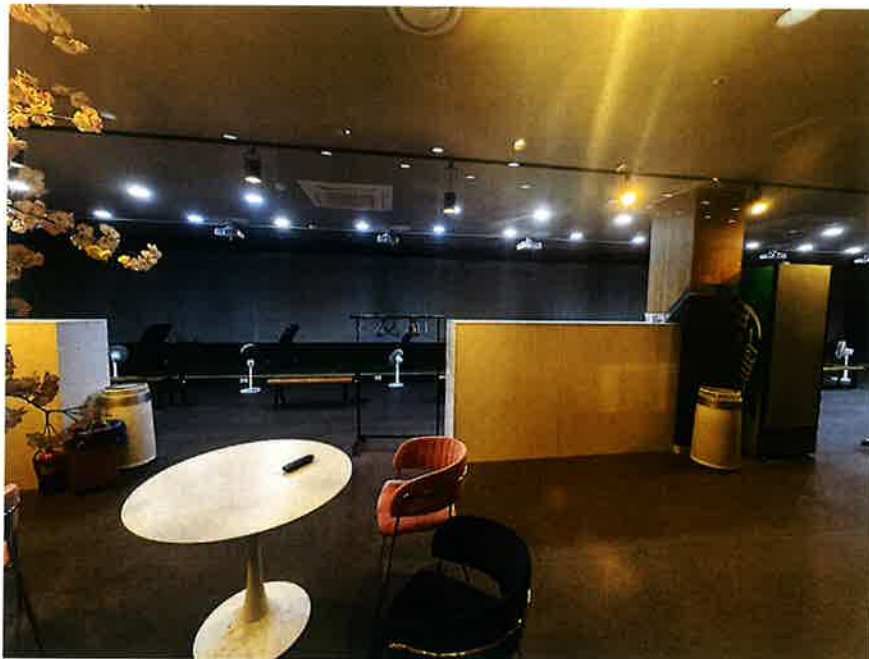


일련번호(가)

사 진 용 지



일련번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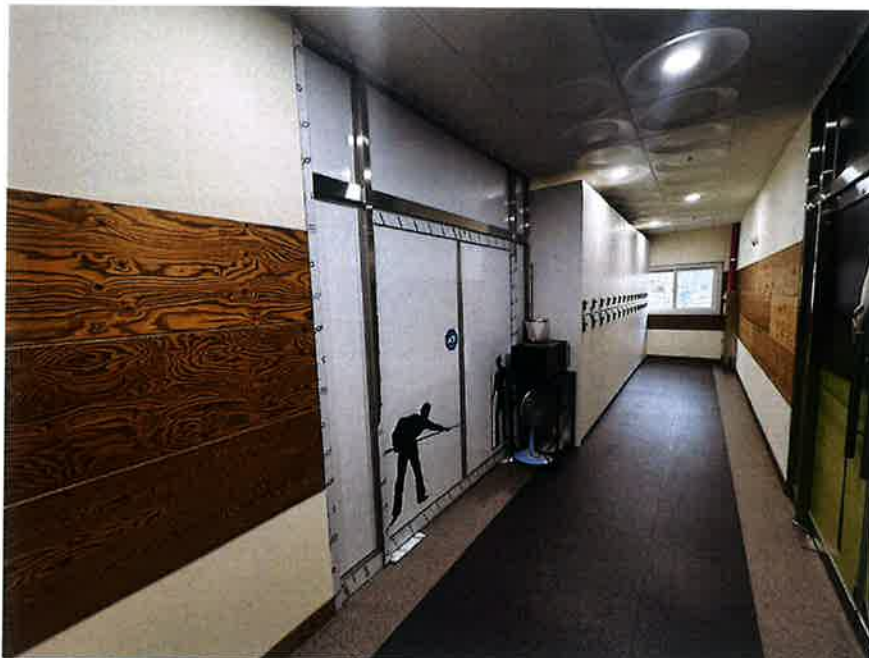


일련번호(다)

사 진 용 지



일련번호(라)



일련번호(마)

사 진 용 지



일련번호(바)



일련번호(사)

사 진 용 지



일련번호(마)~(사)



일련번호(아)

사 진 용 지



일련번호(아)



일련번호(아)